

KERI Brief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keri.org)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 장수기업이 사라지고 있다. 상속세를 내야 할 시점에 회사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익을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려야 할 수도 있고, 결국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이 사라지게 만들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국가경제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기업이 '상속'이라는 범형식적 절차로 인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안될 것이다. 주요 외국에서는 상속세의 과세실적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2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위 등 상속세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반(反)하고 있다.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업상속세제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인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법개정안도 일부 사후관리 요건만 완화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승계취득가액 과세(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기업승계시 주식이나 사업용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상속인의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그 적용대상은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상속공제에 비해서 사전·사후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시점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부과해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1. 검토배경

□ 기업승계¹⁾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²⁾ 장수기업이 사라지고 있음

- 2018년 중견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84.4%는 '기업승계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가장 큰 이유(69.5%)는 상속세 부담이었음
- 실제로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창업주들이 회사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승계가 어려워지면서 국내 알짜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기업승계 문제가 선결되어야 경영 의욕도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텐데, 지금 상속세제 하에서는 기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함

- 상속세가 차지하는 내국세 비중(약 1%, 2017년 기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지속적으로 상속세를 강화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가업상속공제금액을 확대했지만, 그 적용이 제한적이고 사후 요건도 엄격해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임
 -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 → 7년),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소분류 → 중분류),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완화(근로자수 120% → 100%)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편방안을 발표했지만
 - 3) 그 효과가 미흡시됨
- 기업은 승계시 상속세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재투자보다는 기업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할 수

밖에 없으며,⁴⁾ 이는 기업의 성장동력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결국 상속세의 중(重)과세는 조세수입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여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과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 상속세 중 부분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합리화 또는 보완이 아니라 근본적인 과세제도 개편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기업승계 상속과세의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과세제도 개편방향(자본이득과세제도*)을 제안하고자 함

* 자본이득과세제도: 상속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자본이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 1) 현행 세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사용되는 '가업승계'는 가업이라는 용어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고 특정 집안의 사업승계 의미로 오인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전체 기업을 포괄하는 '기업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 2) 기업승계와 기업성과를 실증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조세체계의 과다한 과세로 인하여 기업의 가업승계는 경쟁력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기업은 승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임. 기업승계기업은 가업미승계기업에 비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주배당금 지급, 퇴직금의 중간 정산, 대손상각 및 총당금의 설정 등과 같은 조세부담 절감의 전략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며, 가업승계를 위한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기업의 현금이 외부유출 되었기 때문에 기업성과가 낮아지는 것임(황우연, "가족기업의 성공적인 승계요인과 기업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2019.7.25.
- 4) 상속세 부담에 따라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어렵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배당을 증대시키는 경우 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될 것임

II. 현행 제도와 국제 비교

1. 상속세 및 기업상속공제 현황

□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⁵⁾로 과세됨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 최고세율 25.3%의 2배에 달하고, 일본(55%) 다음으로 높음

- OECD 회원국 총 36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3개국(63.8%),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3개국

(36.2%)인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중, 직계비속에 상속세율을 추가 인하는 국가는 14개국⁶⁾이며 이 중 4개국은 상속세가 면제되고 있음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10~30% 가산)를 적용하여 과세,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시 최대 65%의 세율처럼 적용될 수 있음

5) 우리나라 상속세율 구간은 다음 표와 같음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6) 프랑스, 벨기에, 독일, 칠레,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그리스, 폴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헝가리

〈표 1〉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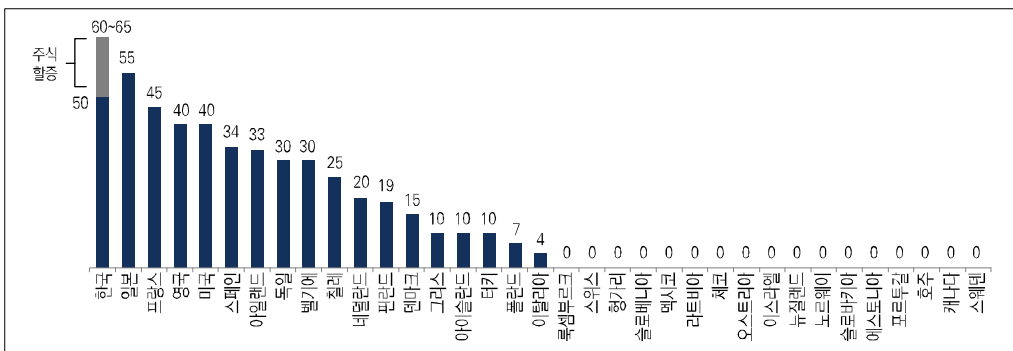
최대주주 등 지분율	할증률(일반기업 대상)	할증률(중소기업 대상)*
50% 이하	20%	10%
50% 초과	30%	15%

주 1: 중소기업의 경우 2020.12.31. 이전에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주 2: 2019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기업의 할증률은 모두 20%로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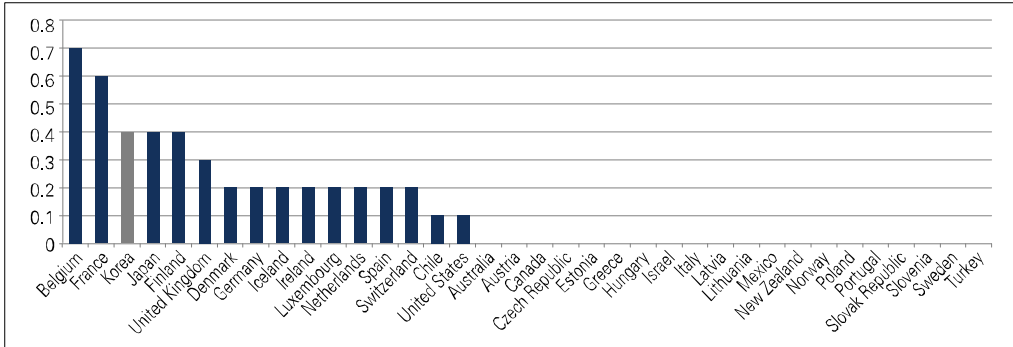
〈그림 1〉 직계비속의 기업승계시 상속세 최고세율(2017년, %)



주: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지 최고세율이 60~65%에 달함

자료: EY 한영,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8

〈그림 2〉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2017년, %)



자료: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표 2〉 현행 기업상속공제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구분		현행 내용	개정안
요건	적용대상	·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자산 5천억 원 이하 중소기업	-
	기업 및 피상속인	〈기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경영 ·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종사 〈지분율〉 · 특수관계인 포함 50% (상장기업 30%) 이상	-
	상속인	· 2년 내 기업 종사 및 대표자 취임	-
기업상속공제 금액		〈공제금액〉 100% 〈한도〉 · 2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20년 이상), 500억 원(30년 이상)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10년 · 가업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소분류 내 변경 허용) · 가업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 지분유지 · 고용유지: 매년 80% + 10년 평균고용 100%(중견기업 120%)	7년 · 중분류 내 변경 허용 · 예외사유 추가 - · 중견기업도 100%

○ 2017년 기준 상속세액은 2조 3,419억 원이며, 전체 국세 265조 3,849억 원 중 상속세는 0.8%, 상속세 및 증여세 합계는 6조 7,852억 원으로 국세 중 2.6%를 차지함

- 2017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4%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음

□ 1997년부터 기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고 요건이 엄격해서 활용이 저조함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적용대상을 매출액 3천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했고,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나 상속인의 가업 종사·대표자 취임 등 엄격한 적용 요건 및 가업·고용유지 등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정부는 일부 사후관리 요건(기간 축소, 업종변경범위 확대, 중소기업 고용유지의무 완화 등)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 하지만, 적용대상과 사전 요건의 변화가 없고 완화된 고용유지의무도 총급여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수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이라도 추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취득가액으로 함⁷⁾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이연되는 것임⁸⁾ ○ 2011~2017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 평균 이용건수는 76건, 공제금액 2,089억 원이지만 독일은 연평균 1만 2,500건, 공제금액 284억 유로(한화 약 36.5조 원)에 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경영기간, 고용유지,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고, 독일과 비교할 때 100배 이상 차이남 - 정부의 세법개정안도 독일의 제도에 비해 공제대상과 사전·사후 요건 모두 엄격하고, 특히 고용유지 요건의 기준이 근로자수가 아니라 급여총액으로 전환되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환경에 적합할 것임 <p>7)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① + ②)임(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②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p>* 가업상속공제율 = 가업상속공제액 ÷ 가업상속재산가액</p> <p>8) 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r> <th colspan="3">전체 양도차익(200)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피상속 취득 (취득가액 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업상속공제 (시가 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속인 양도 (양도가액 300)</td> </tr> </table> <p>②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일반 상속의 경우</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r> <th colspan="3">상속인의 양도차익(100)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피상속인 취득 (취득가액 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속세 납부 (시가 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속인 양도 (양도가액 300)</td> </tr> </table>	전체 양도차익(200)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피상속 취득 (취득가액 100)	가업상속공제 (시가 200)	상속인 양도 (양도가액 300)	상속인의 양도차익(100)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피상속인 취득 (취득가액 100)	상속세 납부 (시가 200)	상속인 양도 (양도가액 300)
전체 양도차익(200)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피상속 취득 (취득가액 100)	가업상속공제 (시가 200)	상속인 양도 (양도가액 300)											
상속인의 양도차익(100)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피상속인 취득 (취득가액 100)	상속세 납부 (시가 200)	상속인 양도 (양도가액 300)											

〈표 3〉 가업상속공제 결정 현황

구 분	한 국		독 일	
	건 수	공제금액(백만 원)	건 수	공제금액(1,000유로)
2015년	67	170,593	24,006	56,780,667
2016년	76	318,378	10,636	21,424,522
2017년	91	222,598	9,260	20,387,105
평 균 (2011년~2017년)	76	208,949	12,513	28,409,179

자료: 국세통계연보, Finanzen und Steuern(Erbschaft-und Schenkungsteuer)

2. 주요국의 기업승계 상속과세제도

□ 우리나라는 2000년 상속세율 및 과표 구간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2000년에 들어 스웨덴(2005년), 체코(2014년) 등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상속세를 완화·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 상속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인식 하에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보다 유용하다는 사고⁹⁾를 바탕으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13개국은 폐지 또는 미도입

-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여 과세하고 있으며,¹⁰⁾ 주로 피상속인의 미실현된 자본이득을 상속인이 처분할 때 과세하도록 이연하고 있음
- 현재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OECD 절반가량(17개국)임. 상속세를 부과하지만 직계비속에 대해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국가는 스위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헝가리임

○ 아래에서는 상속세 과세국가 중 주요국의 기업승계 세제지원제도를 비교·검토하려 함

□ 해외 기업승계 세제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까지도 대상이며, 대부분의 적용 요건이 우리나라 보다 간소화되어 있음

○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기업규모별 제한이 없고, 대부분의 사후관리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짧음

- 상속 후 최소 기업경영 기간은 프랑스 3년, 독일 5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짧고, 지분보유 최소 의무기간도 프랑스 4년, 독일·일본 5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짧음
- 고용유지 요건도 우리나라는 10년 이상으로 엄격하지만 일본(6년), 독일(5-7년), 프랑스는 동 요건이 없음¹¹⁾

○ 특히 독일의 제도는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16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상황임

-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사업영위나 상속인의 사업 종사·대표자 취임 등은 독일의 제도상 요건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지분율도 우리나라의 50%(상장기업은 30%)에 비해 독일은 25%로 엄격하지 않음
-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유지 요건도 총급여 5년간 400% 또는 7년간 700%이고, 우리나라의 일자리수 10년 1,000%(중견기업 1,200%)보다 기간 및 비율 측면에서 엄격하지 않음¹²⁾

○ 일본의 경우에도 2019년 4월부터 '신사업승계제도'를 시행해서 납세유예 대상 주식수의 상한을 없애고, 승계 후 5년간 80%라는 고용조건을 못 지키는 경우에도 계속 유예되도록 해서 기업승계를 장려하고 있음

9) 상속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은 세수입을 얻기 위해 국부유출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속세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음 (William W. Beach. 2001. "Time to Repeal Federal Death Tax: the Nightmare of the American Dream", Background, The Heritage Foundation, April 4)

10)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

11) 개정안의 7년도 다른 외국과 비교하면 장기간임

12)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동일하게 7년간 700%로 완화했지만, 근로자수 요건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음

〈표 4〉 주요국의 기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비교

구 분		독일	일본	프랑스
사전 요건	피상속인 요건	<기업규모 제한 ×> · (85% 공제) 비사업용자산 50% 이하, (100% 공제) 비사업용자산 10% 이하 · 자산 2,600만 유로 초과 기업은 필요성 심사 절차	· 비상장 중소기업, 승계회사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주식 50% 초과 보유	· 제조업(공업, 수공업), 상업, 농업, 자유업의 업종제한 있으며 최소 2년간 지분 보유
	상속인 요건	×	· 피상속인의 친족, 상속개시 직전 임원,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내 대표 취임 · 최대주주, 의결권주식의 50% 초과 보유	×
기업상속 공제금액		· 자산 2,600만 유로 과시 75만 유로당 1%p씩 공제율 감소, 최대 공제가능 자산 9천만 유로	· 발행주식총수의 2/3 한도(2019.4월부터 공제상한 없음), 비상장주식의 80% 상당 상속세 유예	주식가치의 75%
사후관리		· ① 85% 공제 요건 - 사업승계 후 5년 이상 가업 및 고용유지(급여총액 기준으로 5년간 400% 이상) · ② 100% 공제 요건 - 사업승계 후 7년 이상 가업 및 고용유지(급여총액 기준으로 7년간 700% 이상) ※ 종업원 5인 이하 급여총액 유지의무 면제	· 상속 후 5개월 내 대표이사 취임 및 이후 5년간 대표직, 상속받은 지분 유지 · 근로자수의 80% 이상 5년간 유지(탄력 적용)	· 상속 후 4년간 면세 적용받은 지분 유지 · 3년 이상 가업 운영, 매년 면세적용 요건 입증 · 고용유지 요건 ×

III.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개편방향

1. 기업승계에 대한 조세장벽(tax barrier) 제거 필요

□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시 조세장벽을 발생시켜 창업주들은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음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아 2위임

- 2017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음

○ 실제로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기업상속공제 때문에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창업주들이 한국M&A거래소(KMX) 또는 사모펀드에 회사매각을 의뢰하고 있음

- 작년 한해 KMX에 매각을 의뢰한 기업(730개) 중 상속하지 않고 매각하여 현금으로 물려준다는 기업이 118개(16.2%)임

○ 기업승계시 상속재산은 주로 주식이나 부동산이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매각, 물납¹³⁾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승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속세임¹⁴⁾

- 기업승계가 어려워지면서 국내 알짜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서 상속세율이 65%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더 큰 조세장벽으로 작용되며,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

○ 유가증권(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반영률이 부동산 등 기타자산에 비해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므로, 주식의 비중이 클 경우 실효세율은 60%(65%)에 근접하게 됨

- 2017년 기준 상속재산 500억 원 초과구간에서는 유가증권이 가장 큰 비중(42.8%)을 차지하며, 토지·건물 비중은 13.9%에 불과함¹⁵⁾

- 13)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 주식의 가액이 50% 이상이고 상속세액이 2천만 원 이상일 때 물납이 가능하고, 상속세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한도에서 연부연납도 가능함. 그러나 상장주식은 물납이 불가능하고, 물납한 경우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것임
- 14)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도 기업승계시 애로사항으로 상속증여세 조세부담(69.5%)을 1순위로 꼽았음
- 15) 2018 국제통계연보 참고

〈표 5〉 최대주주 할증평가 사례

구 분	상속주식수	주당 시가	주식가액
주식가액	20,000,000주	× @50,000원	1조 원
할증평가	30% 할증 (최대주주 등 지분율 50% 이상)		
상속재산	1조 3천억 원		
상속세	약 6,302억 원 (실효세율 약 63%)*		

* 상속주식가액 1조 원에 대하여 30% 할증 평가·계산하고, 일괄공제 5억 원 및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경영권 프리미엄에 근거한 주식 할증평가는 경영실적, 성장잠재력, 대외 위험도,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할증률의 적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현행 할증과세 방식은 과세근거가 취약함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획일적으로 최대주주에 대해서 할증평가하지 않으며¹⁶⁾ 영국, 독일 등은 소액주주에 대하여 할인평가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만 획일적으로 최대주주에 대해서 할증평가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조세장벽을 제거하고 기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기업승계 관련 상속과세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

○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자 경영기간, 고용유지,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사후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작아서 큰 의미가 없음

- 2011~2017년 가업상속공제 평균 이용건수는 76건, 건당 평균 공제금액은 약 27억 원임

-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사후관리 기간과 고용유지의무를 완화했지만, 제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적용대상이나 사전 요건에 대한 개편은 포함하지 않아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임

* 고용유지의무 요건도 근로자수 기준이 아니라 신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총급여 기준으로 전환되어야 기업경영에 저해되지 않을 것임

□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은 추후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승계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고 자산의 양도시 한번에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기업승계시 상속세는 기업실체(business entity)의 변동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기업승계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국가경제에 도움 되도록 기업이 유지·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승계시 상속세를 유예하고 추후 자본이득세를 부과해서 조세장벽을 제거해야 함

- 다만, 조세형평 측면에서 무상이전을 받는 상속인에 대한 과세공백이 없어야 할 것임

2. 자본이득과세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 자산의 보유에 따라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도입 가능한 과세방법은 무상이전시 과세, 승계취득가액과세, 신취득가액 과세 등 3가지가 있음¹⁷⁾

○ [무상이전시 자본이득과세] 상속재산이 상속인 등에게 무상이전 될 때 피상속인의 해당 상속재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함¹⁸⁾

16) 미국의 지배주주 보유주식 할증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할증뿐만 아니라 할인평가도 가능함. 일본은 거래를 통해 사후적으로 측정된 가치만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정함

17) 안경봉·정희선,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 「세법연구」 06-05, 한국조세연구원, 2006.11.

18) 피상속인의 생전에 발생한 미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청산하는 의미로 과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이론상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¹⁹⁾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한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결집효과(bunching effect)가 발생되어 기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승계취득가액 과세]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상속재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유예하고, 상속인이 양도(처분)했을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의 계산은 상속인의 상속재산 양도가액에서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했을 때(소득이 실현되었을 때) 과세한다는 것임 - 이 방법은 사업의 원활한 승계 측면에서 상속시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없애주고, 추후 양도시 그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모두 과세하므로 조세형평에도 부합하는 방법일 것임 ○ [신취득가액 과세] 상속인이 무상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본이득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상속시점의 시가를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무상이전시점에 자본이득의 실현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계취득과세방법과 같으나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영원히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 피상속인(사망자)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전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과세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기업승계시 주식이나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²⁰⁾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상속인의 양도시점에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면서도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부동산 등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자산(사업관련 자산)을 제외하고는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하며, 현행 기업상속공제도 주식이나 사업관련 자산만 공제하고 있음²¹⁾ ○ 현행 기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한정된 적용대상이므로 승계취득가액 과세(자본이득과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다음과 같이 사전·사후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부과하여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야 함
<p>□ 과도한 상속세라는 조세장벽을 제거하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자본이득과세 방안은 '승계취득가액 과세'일 것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 피상속인의 생전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하는 체계이므로, 피상속인이 과세대상자산을 생전에 양도한 후 현금으로 상속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그대로 상속하더라도 경제적 담세력에 부합되는 조세부담은 동일하게 나타남 20) 2017년 상속재산은 (토지)32.4%, (건물)27.4%, (금융자산)16.2%, (유가증권)13.9%, (기타)10.1% 순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업승계가 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500억 원 초과구간에서는 (유가증권)42.8%, (기타)36.1%, (토지)12.2%, (금융자산)7.3%, (건물)1.7%임 21) 기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상자산의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의 자본이득을 모두 합해서 과세해야 함. 장기간 처분하지 않는다면 과세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장기간 처분을 하지 않고 고용의 유지와 확대를 권장하는 측면이 중요함

〈표 6〉 기업승계시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방안

구 분		현행 기업상속공제	자본이득과세 도입방안
요건	적용대상	·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자산 5천억 원 이하 중소기업	〈기업규모 제한 ×〉
	기업 및 피상속인	〈기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종사 〈지분율〉 · 특수관계인 포함 50% (상장 30%) 이상	〈기업영위기간〉 · 5년 이상 경영 〈지분율〉 · 특수관계인 포함 30% (상장 20%) 이상
	상속인	· 2년 내 가업종사 및 대표자 취임	· 2년 내 대표자 취임
지원방법	〈공제〉 주식, 사업용자산 등 가액 100% 〈한도〉 2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20년 이상), 500억 원(30년 이상) 〈양도소득세〉 부동산, 주식 등은 추후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과세이연〉 · 상속시 주식, 사업용자산 비과세 · 대상자산 처분시 자본이득과세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10년(개정안 7년) · 가업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소분류 내 변경허용(개정안 중분류)] · 가업자산 20% 이상 처분금지 · 지분유지 · 고용유지: 매년 80% + 10년 평균고용 100% [중견기업 120%(개정안 100%)]	〈사후관리기간〉 5년 · 기업유지: 휴·폐업 금지 ·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 지분유지 · 고용유지: 총급여기준 매년 100%(대기업 110%)	

IV. 요약 및 결론

□ 국가경제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기업이 '상속'이라는 법형식적 절차로 인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축소되거나 해체되서는 안될 것임

○ 부진한 국내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 중요시 되는 현재 시점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상속세 장벽은 해소되어야 함²²⁾

- 특히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돈이 아닌 미래가치를 상속하는 것이므로,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함

- 상속세를 내야 할 시점에 회사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익을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려야 할 수도 있고, 결국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이 사라지게 만들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주요 외국에서는 상속세의 과세실적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²³⁾을 가지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세율 2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위 등 상속세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반(反)하고 있음

○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될 필요가 있음

- 현행 가업상속세제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인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있음

- 정부의 세법개정안도 일부 사후관리 요건만 완화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승계취득가액 과세(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야 함

○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임

○ 구체적인 방안으로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기업승계시 주식이나 사업용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상속인의 양도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임

- 적용대상은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에 비해서 사전·사후 요건도 완화해야 함

- 다만,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시점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부과해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해야 함

○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자본이득과세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22) 조경엽(2015)의 연구에서도 상속세 개편으로 자본이 축적되면 생산과 투자가 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고용은 2013년 상용 근로자 1,230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6만 개에서 1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됨(조경엽,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5.12, p.61)

23) 상속세를 부과하는 입법목적은 소득세의 보완적인 조세라는 점과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기회균등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점을 들 수 있으나, 실제 상속세의 부과는 사망자수에 비하여 매우 낮아 입법목적의 효과는 미미하고 일반적인 국세와 달리 조세수입 대비 징세비용이 높아서 조세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함